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목 차 ---

연번	의안명	담당부서	쪽수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 담당관	1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11
4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7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포상금 지급의 신청 및 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나.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정함(안 제12조)
- 다. 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00천원 편성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6. 15.~7.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u>위원회</u>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④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u>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설>	제13조(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수당

나. 관련 조문

-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안 제5조)
- 2)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등(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나. 2026년 추계: 1,700천원

-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500천원 편성예정
- 2)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가) 12명*1회*100천원 = 1,200천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6-62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 과제 정비,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해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평가) 법령불부합 정비(안 제1조·제2조)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정부합동평가) 사업자차별 규제 개선정비(안 제3조)

1)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 “우선” 삭제

다.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안 제4조~제17조)

1)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2)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지식재산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상업등기법」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6. 2.~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3조 중 “우선구매에 대해”를 “구매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 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거창군 예비군 지역대장

제5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각각 한다.

제15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6-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초대형 산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으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주민 대피체계 수립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대피안내요원 지정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정보공개의 원칙, 대피명령 발령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대피 교육·훈련, 경비지원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42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4천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3. 4.~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경상남도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 및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회신 반영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과 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5.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3. 대피장소 지정 등
4. 대피정보 공개
5. 대피명령 발령 등
6. 대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① 군수는 주민들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피안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등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2. 다음 각 목의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3. 그 밖의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민방위 사이렌,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제9조(대피교육·훈련)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과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군수는 주민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

나. 관련 조문: 경비지원(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2026년 예산 4천만원

1) 재난지원금 3천만원

2) 재난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보상금 1천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조 정 순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6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4조·제5조)

-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2) 위원 위촉 시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위원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등을 정함(안 제1조,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4. 7.~4.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제5조제3항제4호 중 “사람”을 “사람.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4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u>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u>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u>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u> <u>제4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u>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u>법 제22조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u>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u>」 제11조 각 호의 사항 <u>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해당없음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단순 위원회 명칭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2025. 11.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작성자 환경과장 신 동 일